

8,000萬원, 감리비 3,700萬원이 증가되었으며 민자투자자 공사비 상환금은 1億 1,700萬원이 삭감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今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 1997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끝에 실음)

○議長 金清一 郭所得 企劃室長 수고하셨습니다.

本豫算案은 各常任委員會豫備審查와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充分한審查가 되도록回附하겠습니다.

### 5.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14時21分)

○議長 金清一 議事日程 第5項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을 上程합니다.

本案에 대하여 金仁運營委員長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長 金仁 존경하는 金清一議長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議會運營委員長 金仁 議員입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提案理由를 말씀드리면 금번臨時會時 提出된 97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審查를 하여 합리적인 재정조정과 균형있는 區政의 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地方自治法 第50條 第2項 및 沙下區委員會條例 第7條, 第9條의 規定에 의거 總務社會委員會 5名, 都市產業委員會 6名 總 11名의 委員을 選任하여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構成,

審查活動을 전개하고자 하며 沙下區議會會議規則 第61條 2項 規定에 의거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活動期間은 6月23日부터 6月24日까지 2日間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本運營委員會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78
----------	----

제안년월일 : '97. 6. 5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 1. 주 문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사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코자 함

####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사하구청장이 제출한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함

#### 3. 주요골자

가. 관련규정 :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

나. 구성인원 : 11명(총무사회위원회 5, 도시산업위원회 6)

다. 위임선임 :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추천으로 본회의 의결 거쳐 선임

라. 심사내용 :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